사업-3-1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국방 5G(특화망) 응용체계 구축 사업
○ 지원내역 : 충주기지「국방 5G(특화망) 응용체계」와「지능형스마트비행단 표준플랫폼」間 체계연동 및 종합상황판 데이터 통합 시각화 지원
○ 발주기관 : 공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이에스이(주)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 지원내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예상 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전 체계연동 시 (부가세 포함 : 일억원)
- 체계당 연동 시 (통합체계 포함) (부가세 포함 체계당 : 이천만원)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08월 13일

발주기관(수요자) 공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 (인)

제조사 또는 공급자 이에스이(주) (인)